성동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

- 1. 보육가족과-30518(구청장 방침 제548호, 2014. 10. 24)호 「성동외국인근 로자센터 재산교환 시행계획」과 관련입니다.
- 2. 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와 시유재산(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예정 부지) 간의 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, 「서울특별시 성동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2조(공유재산의 관리), 동 조례 시행규칙 제2 조(공유재산・물품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), 제3조(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)에 의거 재산분류 및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.

- 재산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 내역 -

소재지	지목	면적(m²)	취득방법	재산분류	재산관리관	비고
성수동1가 685-581	잡종지	226	교환	행정재산	자치행정과	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예정부지

- 붙 임 1.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재산교환 시행계획 1부.
 - 2. 등기부등본 1부. 끝.

